

李朝初期의 對日 非正常的 去來에 대한 法的 規制

—密貿易을 中心으로—

The Legal Restraint on the Abnormal Trade with
Japan in the Early Yi Dynasty

全秉翼

Byung Ik Jun

目 次

I. 序	(2) 倭館去來를 통한 約條 및 規制定立 의 過程
II. 倭寇의 分析	① 倭館의 渡來規制
(1) 倭寇의 極端의 無去來性	② 恒居倭의 諸禁規制
(2) 倭寇의 起源의 狀況	(3) 癸亥約條와 去來規制
(3) 倭寇의 構造와 侵入樣態	(4) 壬申約條와 去來規制
(4) 倭寇의 掠奪과 極端의 無去來에 대한 對備策	(5) 丁未約條와 去來規制
III. 李朝 初期의 去來規制	(6) 關市 및 潛商에 관한 規制
(1) 倭館과 去來定立過程	VI. 맺는말
	参考文獻

Abstract

Korean history has always progressed wi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related with each other.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trade with Japan which was carried on in the Waegwan (Japanese Mercantile House) and further more to study smuggling to Japan.

The abnormal trade is not confined in the matter of smuggling but it is likely to be carried on when the balance of power of military,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ffairs is broken.

Therefore the author attempts to survey critically the ways of restraining the abnormal trade with Japan in the early Yi Dynasty and to find subjective rules to overcome ordeals in the future.

In this paper the author analyzed the violence committed by Waegu (Japanese pirates) which resulted in extreme "no trade" and described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trade and criticized various trade systems in the Waegwan in the early Yi Dynasty.

I. 序

韓半島는 半島國家로서 그 歷史性이 多樣한 것 만은 사실이었고 특히 對內的 要因과 對外의 要因이 항상 相互聯關係를 맺으면서 韓國史는 形成 發展되었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主로 李朝初期 釜山倭館을 中心으로 하여 종전의 貿易史의 立場에서 潛商 密貿易을 관찰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 對內 對外의 인 力關係에서 非正常的인 去來關係를 보고자 本論題를 택한 것이다.

즉, 李朝 初期를 李氏王朝의 創業을 前後한 倭寇의 창궐에서 工亂까지를 말한다면, 李朝 初期의 非正常的 去來關係의 歷史는 그야말로 極端的 無去來關係(倭寇)에서 출발하여 極端的 無去來關係(壬辰倭亂)에서 끝났다고 보겠다. 여기서 말하는 非正常的 去來關係를 바로 極端的 無去來關係를 除外한 去來關係, 즉 倭館을 中心으로 하는 去來關係에서 그 나름대로 存在하였던 歷史의 非正常的 事實을 우선 想定하고, 非正常的 去來關係를 論究함에는 結局 極端的 無去來關係와 非正常的 去來關係를 바로 문제시하여 韓日간의 去來關係를 時代의 또 歷史的 變動狀況에서 파악함으로써 보다 接近된 문제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비단 李朝 初期의 朝鮮과 倭國만이 그러한 過程을 밟으면서 去來關係가 發展한 것이 아니고 對明・對清關係는 물론 그 후 특히 李朝後期에 對日・對西歐關係에 있어서도 극히 類似한 關係로 一進一退한 歷史的 事實을 看過할 수 없겠다. 특히 筆者가, 우리나라의 모든 對外關係는 바로 對內의 要因의 反射的 關係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極端的 無去來關係는 물론이고 非正常的 去來關係를 止揚하여, 그야말로 正常的 去來關係를 철저히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歷史的 使命을 自覺시키는 뜻에서, 本論文을 前進의 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李朝의 對外政策이 「事大交隣」에 있다고 한다면 筆者は 「事大交隣」自體를前提로 하면서, 그것이 지니고 있는 極端的 無去來의 경우와 그것을 除外한 非正常的 去來의 경우를 항상 念頭에 두고 그것을 그때 그때마다 李朝 初期의 政策擔當者가 여기에 어찌한 對應策, 말하자면 法規制方式을 어떻게 취하였는가를 積極的 또는 消極的인 兩方面에서, 또 그 對應態勢 즉 規制體制의 性格을 파악하면서 앞으로 政策의 으로나 法의 으로 어떤 規制를 합이 적절한 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종전까지 우리의 法史가 對內의인 것에 그 精力を 傾注하였던 것을 이제 對外의 으로 그 認識을 轉換해야 할 時機가 올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對內의 으로나 對外의 으로 試鍊을 克服할 수 있는 規範確立이 곧 우리의 主體의 規範으로 되어 그 속에 發展할 수 있는 性向이 內包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規範性이 內包되어 있는 規制方式을 모색하기 위하여 本論題인 初期의 非正常的 去來에 接近하면서 多角的 내지 全方位의 으로 對處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非正常的 去來에는 비단 物의인 것에 한하지 않고 人的인 것은 물론

심지어 그 범주속에 당시의 國防, 軍事, 政治, 經濟, 社會등 모든 관계를 포함시켜 그것이 지니고 있는 力關係의 均衡이 깨어질 때 일어나는 「非正常的 去來」를 規制하는데 力点을 두고 分析코자 한다.

위와같은 方法論의 案지에서 대략 ① 第一次 極端의 無去來 사항으로서 우선 高麗末에서 李朝初期에 창궐한 倭寇에 대한 分析을 하고 ② 李朝 初期의 去來規制 定立過程을 說明하면서 李朝初期의 倭寇去來體制의 諸形態 등의 順序로 本論文을 展開코자 한다.

I. 倭寇의 分析

(1) 倭寇의 極端의 無去來性

高麗末로 부터 李朝 初期의 极심한 倭寇의 侵奪은 極端의 無去來 現象으로 나타났는데 倭寇의 侵奪이 一部의 것이라면 壬辰倭亂은 韓半島의 全般에 미치는 侵奪이면서 가장 노골적인 極端의 無去來의 발현이었다.

따라서 李朝는 倭寇와 같은 侵奪의 中止를 그 目的으로 하는 公貿易과 私貿易이 그 基本의 課題였다. 그런 意味에서 倭寇에 대한 研究는 韓日貿易의 逆現象이라는 觀點에서 重大한 意義를 가진 것이라 하겠다.

倭寇라는 말은 일찍부터 日本人에 대한 韓, 中의 去來拒否—海賊—으로서의 史的 性格이 있는 바 「高麗史」에

王曰 小邦亦請依上國法點戶 又請留合浦鎮成軍 以備倭寇 帝曰 何必留之 其能無害汝於民乎 汝可自用汝國人 鎮戍倭寇 不足畏也¹⁾

라고 記錄되고 있는 것을 보면 忠烈王 4年(西紀 1278年)에 이倭寇라는 用語가 史의 熟語로 使用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겠고 倭人 掠奪을 表示한 것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 性向의 獨特化를 위해 「倭寇」라고 固有名詞화한 것 같다. 그러나 戰後의 日本의 史學者들에 의한 實證的 研究가 進行됨에 따라倭寇의 實體가 僞倭 假倭 裝倭라고 불리우는 非日本人 海賊도 적지 않았다는 事實을 밝히고 그러한 無去來狀況을 变명하려고 하는데 그 一例를 보면 「倭寇라는 말은 오늘날 보통의 歷史的 名詞로 使用되고 있으나 그 内容을 考察하여 보면 대 실로 多樣하고, 武裝商人 海賊의 商人 中國商人 朝鮮人 海賊 포르트칼海賊 그리고 그들의 混成團體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것은 時代의 推移와 社會情勢의 變化에 따라 복잡하게 變動하는 것으로倭寇는 즉 日本人 海賊이라는 概念 把握은 우선 修正되지 않으면 안된다」고²⁾ 하고 또 「16世紀의 中國의 沿海에 있어서는 裝倭 僞倭 假倭의 數가 真倭의 數보다 많았다고 말할 수 있을

1) 高麗史 卷28, 忠烈王 4年 7月 戊戌條.

2) 田中健夫, 中世海外交涉史の 研究 1面. 東京大學出版會.

정도였다」고³⁾ 한다. 결국 倭寇라는 倭字가 그 本源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派生의 現象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결코 本末을顛倒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知能的이고 美辭麗句의인 叙述에 關心을 가져서는 안되겠다. 실제 高麗末 우리나라에도 假倭가 있기는 하였다.

즉 「高麗史」에

禾尺部聚 許爲倭賊 侵寧海郡 焚公廟民戶 遺判密直林成昧 同知密直安沿 密直副使
皇甫琳 前密直副使姜策等 追捕之 成昧等獻所 獲男女50餘人 馬二百餘匹 禾尺即揚
水尺⁴⁾

처럼 禾尺 即 揚水尺들이 모여 倭賊으로 許稱하고 公廟民戶를 焚蕩한다 하였으니 倭寇와 비슷함을 짐작할 수 있고 또 그 構成規模도 알 수 있다. 또 倭寇가 근절되다 싶이 한 世宗 때에도
臣聞前期之季倭寇興 行民不聊生 然其間倭人不過一二 而本國之民假著倭服 成黨作亂
是亦鑑也⁵⁾,

처럼 假倭가相當하였던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倭寇가 거의 종식상태에 들어간 世宗中
期에도 이처럼被害가 있었기는 하지만 종전의倭寇에 비한다면 假倭는 실상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하니 그 性格파악에 混同이 있어서는 아니되겠다.

이와같이倭寇의 性格을 본다면 다음 項의 記錄에 의해 자세한 설명을 不要할 것이다 그들의
主目的이 主副食物의 異端에 있었지만 그들의 內心에는 항상 去來의 觀念을 拒否한채 外交 貿易의 正常的 力關係가 形成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海賊의 無去來狀況을 자아낼 수 있는 史的 性
向이 있었음을 等等히 認識해야 하겠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對內的 忠實을 통해 그들의 無去來
性向을 事前 事後에 걸친 對備策을 계획해보려는 안된다는 것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
다. 「高麗史」에

又侵京山府 三道沿海州郡 蕭然一空 自有倭患 未有如此之⁶⁾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高麗末에倭寇는 極端의 無去來를 前提로한 武力暴力의 強盜團體임이
틀림없고 掠奪, 殺人, 放火등은 물론 焚蕩, 盜倉, 掠食米, 掠焚漕船, 焚官廟, 侵掠村落 등 所謂 不法
暴力 武力を 통한 系列化된 掠奪行爲가 文獻을 통해 明明白白히 파악될 수 있다.⁷⁾ 이와 같
이 그들의 思考 및 行動을 통해 그들의 組織 및 行動樣式은 그들 나름의 沒價值의 行動性을
에누리 없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2)倭寇의 起源의 狀況

이미 三國時代 鄜夷 新羅때부터 그들은 항상 우리나라와는 極端의 無去來아니면 假裝冠 正

3) 石原道博,倭寇, 91面以下.

4) 高麗史 卷134, 列傳 47 禤王 8年 4月條.

5) 世宗實錄卷114, 世宗 28年 10年 壬戌條.

6) 高麗史卷134, 列傳 47 禤王 6年 8月條.

7) 高麗史全卷, 東國通鑑 등.

常去來를 간혹 …進一退하였지만 특히, 麗末에 와서 倭寇라는 固有名詞로서 通用될 만큼 浮刻된 것은 그것 나름으로 麗末의 內外的인 條件이 있었기 때문에 倭寇活動을 可能케 한 것이다. 즉, 크게 두가지의 條件이 있었음을 여기에 지적하겠는데, 하나는 麗末의 國內的事情과 다른 하나는 元·明과 倭國과의 對外的事情에 기인한다.

麗末의 國內的事情을 본다면, 韓半島는 大陸의 歷史的 變動에 하나의 函數關係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約一世紀동안 元의 支配속에서 달피하지 못하고 非自主 내지 非獨立的인 高麗는 元의 弱化로 復舊의 中興政治를 행함이 目的이었다. 따라서 恭愍王은 主權回復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元나라 王후의 세력을 빙자하여 放恣 橫暴한 奇氏一族의 誅滅과 征東行省理問所를革罷, 東北面 舊土回收運動, 元 年號使用의停止, 官制復舊 등을 단행한 것은 元에 대한 高麗의 態度는 積極 消極 兩面에 걸쳐 機動的인 對處를 꾀하였다. 그러나 國內方面에 있어서 舊態依然한 貴族社會의 惰性을 放任한 것이 原因이 되어 그들의 腐敗 나아가서 그들 力勢의 象徵이라 할 수 있는 土地制度의 素亂은 바로 잡을 겨를이 없었고 또 그만한 腐敗要素를 除去할 權力體系를 確立하지도 못한 채, 對外方面에서는 元의 叛亂軍인 紅巾賊의 侵入, 明의 國交回復에 대한 朴智成, 南으로倭寇의 侵掠 등으로 中興的 野望은 그 自體의 「力」培養의 不足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우기 舊土回復運動 등 自主指向의in 政策實施를 꾀하였든 恭愍王도 王비 魯國公主의 死亡으로 國政의 方관 辛疇의 專橫으로 朝廷의 中樞權力層은 물론 社會自體가 混亂하게 되어졌는데 마침내 被殺의 運命이 되었다. 恭愍王死後 10歳의 幼年으로 即位한 祉王은 明德太后의 生存時에 방종치 못하였으나 太后의 死亡後로는 淫佚放蕩하여 그 餘波가 民家에 이르러 民心마저 惡化되었다. 即 朝廷에서는 外交方針의 不一致로 생긴 事元向明의 兩派對立, 舊權力層과 新權力層의 對立 및 保守派와 新進派의 相剋으로 나타나 政治의 腐敗, 紀綱의 素亂, 權力層의 人民收奪 등이 加增되었다. 더우기 李仁任, 林堅昧 등 一黨들이 文臣들을 축출하고 宰樞兩府와 中外의 要職에 그 親黨과 私人을 배치하고 賣官買職을 慢行하고 나아가 人民의 田土奴婢를 奪取하고 심지어는 國家の 公田까지 私有化하였다. 따라서 百姓은 흘어지고 私蓄財는 蕩渴하였으며 惑世誣民의 徒가 繢出하고 楊水尺 才人 등이 假倭로서 公廡民戶를 奪取하는 등 所謂 無政府의 狀態가 되었다. 이러한 對內的 矛盾이 對外的 모순과 서로 結合함에倭寇의 掠奪의 對象이 되었다. 이와같이 李仁任 등 一黨의 行動이 度가 넘치자 崔瑩, 李成桂 등이 合勢하여 이를 打倒하고 田民弁正都監을 設置하고 占奪된 田土를 돌려주고 按撫使를 諸道에 派遣하여 非行을 바로 잡게 했다. 그려하여 一時의이나마 形式的 國家權力を 保存하더니 攻遼問題로 二大新興軍閥勢力은 兩分되어 결국 回軍派의 實權 장악과 그들만의 田制改革 등으로 高麗滅亡을 國家權力으로는 難局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같이 回軍派는 内部의 積弊, 權臣間의 相剋, 紀綱의 素亂 등이倭寇의 侵奪에 正面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攻遼不可論을 主張하게 되었고 또한 麗元兩國의 日本征伐

以後 倭寇는 갑자기 심하였는데 특히 麗元聯合軍의 對日 공격 실패는 倭人으로 하여금 교만심을 일으키게 하는 有利한 地位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麗元兩國의 事後對策이 없는 틈에 韓·中海邊을 무대로 대담하게 진출한 것이 麗末倭寇發生의 原因이 되었다.⁸⁾

다음 麗末의 日本 事情을 본다면 麗末에 해당하는 日本의 時期는 南北朝時代에 해당된다. 이南北朝時代는 鎌倉幕府가 멸망한 1333년 부터(高麗忠肅王二年 元順帝元年) 南北朝가 室町幕府에 의하여 統一된 1392년까지의 約 60年間이다. 처음 二年間의 建武中興朝(1334~5年)을 除外한 大部分이 南朝와 北朝로 分立 對立하여 武士勢力이 分裂되어 兩朝의 어느 便엔가 加擔抗爭한데서 이 名稱이 나왔다.

鎌倉幕府의 地頭制度와 御家人制度를 二大支柱로 하는 支配體制가 在地의 名主 農民들의 社會 經濟的 發展에 의하여 점차로 동요를 받아 幕府內部의 政治的 軋轔이 심각하여 公家間의 武家政權을 타도하고 古代의인 王朝政權의 부활이 目적이었다. 그러나 天皇 貴族中心의 이 政權은 專制的 支配權의 確立이란 目標 때문에 武士農民=封建勢力에 대한 불만과 반발을 받았다. 이에 代表의인 것이 1335년의 足利尊氏의 反中央政府의 離叛이 있다. 그런데 南北朝의 심각한 對立現象은 足利尊氏가 鎌倉幕府 以來 對立되어 온 持明院統 大覺寺統의 兩派中 持明院統의 出身인 豊仁親王=光明院을 옹입한데 있다. 그뒤 大覺寺統의 出身인 後醍醐天皇은 足利氏의 압력에 못이겨 「神器」를 光明院에 授與하고 京都를 탈출하여 南方 吉野에 옮겨 京都朝廷과 對抗하기 위하여 別個年號인 延元이라 改元하였다. 그러나 南北朝의 對立 끝에 南朝는 멸망하지 않을 수 없고 足利義滿代에 幕府의 統一이 實現되었다. 때문에 南北朝時代에는 現地의 武士들은 內亂에 편승하여 所領을 擴大시키고자 하는 野慾과 여기서 도태된 무리들의 對外的掠奪이 倭寇發生의 원인이 되었음을 추측 가능케 한다. 日本記錄 太平記에도 40餘年的 國內混亂으로 山賊 海賊이 창궐하고 賊徒들이 數千船으로 高麗·元地方에 가서 財寶를 奪取하고 官舍寺院을 소각하여 浦所近處는 災禍화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⁹⁾

(3)倭寇의 構造와 侵入態樣

倭寇에 대한 記錄은 三國時代까지 소급되어 廣開土王碑에도 나오고 있으나 그 本源의 侵入은 論外로 하고 그 構造와 侵入態樣을 地域別 王代別 侵入回數를 열거하여 보기로 한다.

倭寇의 構造는 「高麗史」나 「王朝實錄」에 記載된 것을 모두 수록할 수 없고 高麗忠定王二年(1350年)에서 李朝太宗 8년까지의 重要한 것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一. 倭寇固城 竹林 巨濟 合浦千戶崔禪 都領梁瑋等 戰破之 軒獲三百餘級 倭寇之侵始此(高麗史 卷三七 世家卷 忠定王 2年 2月)

8) 李相伯, 李朝建國의 研究, 5面. 韓國研究院
金庠基, 高麗時代史, 767面. 乙酉文化社.

9) 李鉉宗, 朝鮮前期 對日交涉史研究, 6面~8面. 韓國研究院. 世界歷史大事典(日本 平凡社 刊行), 卷22 日本條,

- 一. 倭船一百三十艘 寇紫燕 三木二島 盧舍殆盡(同上 三年 6月)
- 一. 倭掠全羅道漕船二百餘艘(同上 4年 辛巳條)
- 一. 頒祿時 因倭寇漕運不通 九品祿科不給(同上 34卷 食貨 恭愍王 6年)
- 一. 倭寇角山戍 燒船三百餘艘(同上 世家 卷39 恭愍王 7年 3月)
- 一. 倭寇韓州及鎮城倉 全羅道鎮邊使高用覽 請徙沿海倉 墓於內之 從之(同上 恭愍王 7年 4月)
- 一. 倭江華殺三百餘人 掠米四萬餘石(同上 9年 閏5月)
- 一. 倭船二百十三艘喬桐 京城戒嚴(同上 11年 4月)
- 一. 因倭寇 水路阻梗 罷漕運(同上 列傳 卷46 祚王 2年 閏9月)
- 一. 倭寇密城 倭掠村落 取麥載船 若蹈無人之境……(同上 祚王 3年 5月)
- 一. 京城濱海 倭寇不測 欲遷都內地 會耆老尹恒等 書動止二字 議可否 衆雖心不肯 恐後有變 祚王將及已 皆占動字書名……鑑諫之 事遂寢我(同上 癸未條)
- 一. 倭賊騎七百 步二千 寇晋州(同上 列傳 卷27 揚伯淵)
- 一. 海印寺所藏 7歷代實錄及經史，諸書于善州得益寺……以備倭寇(同上 列傳 卷 47 祚王 5年 9月)
- 一. 倭賊五百艘入鎮浦(同上 列傳 卷39 邊安列)
- 一. 又侵京山府 三道沿海州郡 蕭然一空 自有倭患 未有此之(同上)
- 一. 是時全羅慶尚道 爲倭寇巢穴(同上 列傳 250卷 祚王 14年 3月)
- 一. 倭入椒島 時京城壯丁皆從軍，唯餘老弱 每夜烽火屢舉 京城單虛 人情危懼 莫保朝夕(同上 4月)
- 一. 倭百二十艘 入寇慶尚道 奪兵船十六隻 殺水軍萬戶李春對 陷東萊 機張 東平城(太祖實錄 5年 8月)
- 一. 倭圍東萊城 不克退 焚兵船二十一隻(同上 5年 10月)

以上과 같이 一般的으로 船數가 100隻以上의 것만 간추려 보았지만 少數人員으로 構成된 것도 많다.

이와같이倭寇의 侵入狀況은 李太祖의 不可攻遼의 第三論據인 “擧國遠征 倭乘其虛”를 主張한 것은 政略的으로 要諦를 찌른것으로 볼 수 있고 「高麗史」에 「殺虜人民殆盡, 「倭奴以之而深入千里暴死 莫有禦者 食羹之聲聞于上國 宗廟社稷危於累卵」(高麗史食貨志1), 九品祿俸의 不給, 遷都論의 대두, 三道의 蕭然一空, 壯丁들의倭寇掃蕩從軍 등으로 당시의 國內秩序의 緊急事情을 충족할 수 있다.

다음에倭寇의 侵入樣態를 王代別 侵入回數 및 地域別 侵入狀況을 다음 附表로 알 수 있다¹⁰⁾. 뿐만아니라 이 附表를 통하여 各王代別의 政治狀況과倭寇의 侵入狀況을 追跡함으로써 당시의 國내 政治狀況과 깊은 관계를 짚을 수 있고 並 地域別의 附表를 본다면 地理的 好條件과

10) 李欽淳, 前揭書, 12面~14面.

穀倉地方에 現中했음을 알수 있다.

附表 1.

年度別 侵入回數

西 紀	高 麗	日 本	回 數
1223年	高 宗10年	貞應 2年	1 回
1225年	高 宗12年	嘉祿 元年	1 "
1226"	高 宗13"	" 2"	3 "
1227"	" 14"	安貞 元"	2 "
1263"	元 宗 4"	弘長 3"	1 "
1265"	" 6 "	文永 2"	1 "
1280"	忠烈王 6"	弘安 3"	1 "
1290"	" 16"	正應 3"	1 "
1323"	忠肅王10"	元亨 3"	2 "
1350"	忠定王 2"	觀應 元"	6 "
1351"	" 3"	" 2"	4 "
1352"	恭愍王元"	文和 元"	7 "
1354"	" 3"	" 3"	1 "
1355"	" 4"	" 4"	2 "
1357"	" 6"	延文 2"	4 "
1358"	" 7"	" 3"	6 "
1359"	" 8"	" 4"	4 "
1360"	" 9"	" 5"	5 "
1361"	" 10"	庚完 元"	3 "
1362"	" 11"	貞治 元"	1 "
1363"	" 12"	" 2"	1 "
1364"	" 13"	" 3"	8 "
1365"	" 14"	" 4"	5 "
1369"	" 18"	應安 2"	1 "
1370"	" 19"	" 3"	2 "
1371"	" 20"	" 4"	1 "
1372"	" 21"	" 5"	10 "
1373"	" 22"	" 6"	3 "
1374"	" 23"	" 7年	10 "
1375"	禡王 元"	永和 元"	11 "

1376〃	" 2〃	" 2〃	39〃
1377〃	" 3〃	" 3〃	54〃
1378〃	" 4〃	" 4〃	48〃
1379〃	" 5〃	康 元〃	37〃
1380〃	" 6〃	" 2〃	40〃
1381〃	" 7〃	永德 元〃	26〃
1382〃	" 8〃	" 2〃	23〃
1383〃	" 9〃	" 3〃	47〃
1384〃	" 10〃	至德 元	20〃
1385〃	" 11〃	" 2〃	12〃
1387〃	" 13〃	嘉慶 元〃	7〃
1388〃	" 14〃	" 2〃	14〃
1389〃	昌王 元〃	康應 元〃	5〃
1390〃	恭讓王元〃	明德 元〃	1〃
1391〃	" 2〃	" 2〃	2〃
1392〃	" 3〃	" 3〃	1〃

附表 2. 王代別 傀入回數

王大別	數回	2	4	6	8	10	50	15	100	150	200	250	300	350	400
		(7)	(2)	(2)	(2)	(10)	(74)	(378)							
高 宗															
元 宗															
忠烈王															
忠肅王															
忠定王															
恭愍王															
禡 王															
昌 王															
恭讓王															
太 祖															
定 宗															
太 宗															
世宗25年															

附表 3

地域別 侵入狀況(忠定王→太宗18年)

回數 道別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咸北	
咸南	—(8)
江原	—(32)
慶北	—(54)
慶南	—(85)
全南	—(31)
全北	—(24)
忠南	—(53)
忠北	—(9)
京畿	—(56)
黃海	—(27)
平南	—(4)
平北	—(8)
淸州	(1)

(4) 倭寇掠奪과 極端의 無去來에 대한 對備策

倭寇의 토벌에 功이 커던 李太祖는 攻遼不可論의 第三論據로 지적한 바와 같이 倭寇根絕이 國家至上政策으로 삼았고 이것이 곧 安民之策임을 깨달았다. 따라서 禱王 9年(1383年)의 소위 「安邊之策」인 禁寇獻策에서 그 要點을 보면

- 〈1〉 禦寇之方 在於鍊兵齊舉 今也以不教之 兵散處遠地 及寇之至 倉皇招集 北其至也 寇已撫掠而退 雖及與利 其如不熟 旌鼓不習 撃戟何願 自今鍊兵訓卒 嚴立約束申明號令 待變而作無失業機
- 〈2〉 帥旅之命 係於糧餉 雖百萬之帥 有一日之糧 方為一日之帥 有一月之量 方為一月之帥 是不可一日無食也(中略) 以遊手之僧 無賴之人 托為佛事 冒受權勢書狀 於謁州郡借民斗米尺布歛以額石 尋大號曰友同 徵如逋債 民以飢寒 又諸衙間諸之帥遣之人 群行傳食 剝膚糙髓 民不忍苦 失所流亡十常八九 軍之糧餉無從而出 乞皆禁斷以安百姓 又道內州郡 介於山海 地狹且瘠 今其收稅不問耕田多寡 惟視戶之大小 和寧於道內地廣以饒 皆吏民地祿而 其地稅官不得收 取民不均 餉軍不足 今後道內諸州及和寧 一以耕田多寡科稅 以便公私.
- 〈3〉 軍民非有統屬 緩急難以相保 是以先王丙申之教 以三家為一戶 統以百戶 統主隸於帥

營(中略)窮民既無恒心 又皆雜類 彼此觀望 惟利之從 實然難保 乞依丙申之教 更定軍戶 使有統屬 固結其心.

〈4〉 民之休戚係於守令 軍之勇怯 在於將帥今之爲郡縣者 出於權幸之間 持其勢力 不勸其職 以致軍歛 其須 民失其業 戶口消耗 府庫虛竭 乞自今公選廉勤正直者俾之 臨民字撫鰥寡 又擇堪爲將帥者俾之 捏戎捍禦國家¹¹⁾

이라고 하여 高麗末期 李成桂의 倭寇에 대한 對備策을 要約하고 있다. 즉 첫째倭寇와 싸울 高麗將兵의 弱體性을 들어 軍備強化, 말하자면 實力強化의 必要性을 主張하였고 둘째로 田制의 改革을 역설하여 國家經濟基本單位의 秩序를 確立하여 民心離脫을 防止하려 하였다. 세째 上記 두가지前提에 입각하여 軍官民一體가 되어 禁寇를 위한 末端에 까지 그組織을 強化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네째로 統率力 있는 將帥의 人材登用의 必要性을 力說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對備策이 李朝 建國基盤造成을 위한 根本政策이 되었고 太祖는 물론 定宗과 太宗 및 歷代王들의 水軍改革, 歸化人 장려,倭館設置 등은倭寇防止를 위한 制度的・法的 統制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太祖로부터倭館設置(後述)까지 對倭寇政策으로서의 統制化過程을 水軍整備, 歸化人の 장려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① 水軍整備強化의 規制策

倭國과 朝鮮과의 對倭交涉이나倭寇防止를 위한 軍備擴張에 대한 試圖가 高麗에도 없었던 것 이 아니다. 日本과 高麗가倭寇根絕을 위하여 對倭交涉事項은 여러 文獻을 통하여 알 수 있고 國使幕府將軍使 九州節度使 對馬島使등의 來聘使가 잣았고 被擄人의 送還도 約10次나 되고 있다.¹²⁾ 또 水軍整備의 強化를 위한 諫官禹玄寶의 水軍의 精銳化 및 戰艦建造의 上疏¹³⁾, 李禧의 水軍強化의 上書¹⁴⁾에 依한 舟師制度 등은 軍備擴張에 대한 統制化過程이라 하겠다. 그러나 「高麗史」에 나타난 兵力의 數는 騎兵 14,700名, 步兵 79,800名으로 合計 94,500名이 되나 軍士들의 質이 아주 低質인 데다 民弊까지 끼쳤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⁵⁾

이와같이倭寇防止에 功이 컷던 李太祖는 �即位前에 對倭交涉으로 使僧 覺鎬를 派遣하고 日本 또한 李朝의 禁寇政策에 호응하여 僧 詩久를 使臣으로派遣하여¹⁶⁾ 和平을 도모하는 등 數次의 外交交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또 한편으로 李太祖는 高麗末에 禁寇獻策에서도 알 수 있는

11) 太祖實錄 卷 1 卷首總書.

12) 申基碩, 高麗末期의 對日關係(社會科學, 第一號 18面).

13) 高麗史 卷83, 兵志3 船軍條 恭愍王 22年 5月條

諫官禹玄寶上疏曰……今東西江並置防守 賊泛海揚揚以來 我軍臨岸拱手而已 雖精百萬 其如水何哉 宜作舟艦 嚴備器伏 順流長驅 塞其要衝 賊雖善水 安能飛渡至 되어 있다.

14) 高麗史 卷83, 兵志3 船軍條 恭愍王 23年 1月條.

15) 高麗史 卷81, 兵志35, 船軍條.

高麗史 列傳 25, 田錄生條.

16) 田中健夫, 前揭書 13面.

17) 太祖實錄 太祖 2年 6月條, 3年 5月條 등.

바와 같이 水軍整備強化에 力點을 두고 軍備擴張의 第一次의 統制化에 努力하였다.

따라서 太祖 �即位前부터 防倭寇의 目的으로 三道에 都節制使派遣 및 助戰節制使와 敬差官의任命등¹⁸⁾ 으로 水軍의 體制整備에 努力하는 한편 水軍의 質的 向上을 目的으로 軍船을 點檢하고¹⁹⁾ 江華兵船을 充實케 하였다.²⁰⁾ 또 揚廣道의 對倭寇策에 힘을 쓰는 한편 서울을 中心으로 하는 對倭寇政策을 수립하였다.²¹⁾ 이 당시에 對備倭寇에 대한 軍籍을 보드라도 太祖 元年 5月에는 京畿, 左右揚廣, 慶尚, 全羅, 西海諸道, 廣州, 江陵 등의 騎·步兵 및 騎船軍의 合計가 20萬800餘人의 軍籍을 完備하였다.²²⁾

특히 水軍職의 勞苦가 큼을 인식하고 水軍職의 官位를 승격하여 特別한 대우를 하였다.²³⁾

이와 같이 水軍體制의 精銳化 내지 整備強化는 高麗恭愍王 以後로부터 李太祖에 이르러 완벽한 단계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太祖 5年 12月에 五道의 兵船을 召集하여倭寇의 根據地인 對馬 一岐島를 征伐하려는 計劃이라든가²⁴⁾ 太祖 6年(1397年) 6月에

自庚寅年以後 海寇作耗 沿海州郡悉皆蕭然 近年以來 營造兵船 沿邊守禦 賊不敢近
居民土着 戰艦之功 誠爲最大²⁵⁾

이라고 한 것을 보면 水軍이 整備되어 侵害가 容易한 沿岸의 土着民을 괴롭힐 수 없겠음 兵力의 充實을 期하였다.

더우기 定宗과 太宗에 이르러서는 더욱倭寇防止에 노력하여 定宗은 「三島倭寇爲我國患 幾五十年矣」²⁶⁾ 라고 하여 通信官 朴淳之로 하여금 積極的 外交交涉을 하여 統制化에 그 效果가 있었던 바 定宗實錄에

(前畧) 上禦經筵曰 生民之苦 莫甚於騎船 棄父母妻子之養 無有體息之期 滅可痛惜此
來倭寇寢食 邊境稍安 宜罷三分之一 輪番代戍 且賊之庶何 必要共處 分泊要害之處
舉烽相望 傳檄相聚亦爲末晚……中畧²⁷⁾

이라고 하여 騎船兵의 苦됨을 알고 그 兵力を三分之一의 輪番制로 하여 要害之處에 分泊케 하여 烽火로 위급함을 알리도록 한 것으로 보아 船軍의 效率的 運營을 期하였다. 그러나 本格的 水軍整備의 強化는 太宗 때라 하겠다. 즉 太宗 9年에 水軍의 職制를 改革하여 外官職을 整備하는²⁸⁾ 한편 太宗 3年 9月에

18) 太祖實錄, 太祖 2年 3月 癸亥條.

卷10 太祖 5年 8月 癸卯條 및 辛亥條.

19) 太祖實錄, 太祖 2年 4月 庚子條.

20) 太祖實錄, 太祖 2年 5月 壬子條.

21) 太祖實錄, 太祖 2年 6月 戊戌條.

22) 朴壽伊, 李朝貿易政策論次 129面~130面. 民衆書館.

23) 太祖實錄, 太祖 7年 5月 辛卯條.

24) 太祖實錄, 太祖 5年 12月 丁亥條.

25) 太祖實錄, 太祖 6年 2月 甲午條.

26) 定宗實錄, 卷 1, 定宗元年 5年 乙酉條.

27) 定宗實錄, 卷 1, 定宗元年 3月 甲申條.

28) 韓國史(辰檀學會編), 近世前期編 236面.

命各道水軍節制使 及萬戶千戶沿海各官 皆置遂日簿議政府受判 各道兵船軍官 遇船每以逆風 爲辭不能盡力追捕 今後令都節制使及沿海各官 皆置簿詳記 風霧 雨雪作止時刻 及其方位每當月 每報都觀察使 以憑考察²⁹⁾

이라고 하여 각도의 水軍에 風霧, 雨雪의 作止時刻 및 方位를 每月 觀察使에게 보고케 하는 水軍職 事務內容을 規制하였다. 뿐만 아니라 太宗 3年 12月에는 慶尙 全羅道의 各浦兵船에 대하여 慶尙全羅各浦兵船點檢科罪之法 議政府受判 慶尙全羅道各浦兵船屢被倭侵 致殺人命擇人差遣 點檢各道戰艦軍器火藥不實 及軍人闕位者 以老弱備數者 都觀察使首領官各道守 今照律論罪 軍人兵器 一齊攻守不能者 都節制使首領官 及僉節制使以軍官論罪 其船軍一依司憲府受判 各戶人口田地多少 及壯弱分揀 其壯實者 紿軍器火藥 其屯田醬鹽等事 一依本府受判 兵船泊立 朝往夕還之地外 因循怠弊者 依律論罪 今後兵船諸事 不爲用心完備者 都觀察使節制使 並皆論罪³⁰⁾

이라고 하여 被侵船 殺人, 戰艦, 軍器, 火藥不實 등을 점검하고 근무태만자, 兵器攻守不能者 및 軍器管理에 特別한 責任을 부과하는 科罪之法을 規定하고 있다. 또 太宗 7年 7月에는 倭寇防止에 강력한 政策수립의 結果로 그 成果가 그게 發展함에 따라 水軍의 勞苦가 막심함을 감안하여 民官交代制를 法制화 하였다.³¹⁾

이와같이 太宗때에는 倭寇에 대한 對備策이 이 以外에도 文獻上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太宗의 執權者로서 強力한 統制力を 알 수 있거니와 그 당시 各道의 兵船數를 보면 水軍整備의 結果를 알 수 있다. 즉

議政府請加各道兵船之數 京畿左右道之數 五十一隻 今加完二十五隻 全羅道之數八十一隻 今加完三十隻 慶尙道之數一百三十七隻 今加完五十隻 豊海道之數二十六隻 今加完二十隻 江原道之數十六隻 今加完十隻 忠淸道之數四十七隻 今加完三十隻 西北面之數四十隻 今加完十五隻 東北面之數三十隻 今加完五隻 上項船隻 觀察使以各官殘盛等差材木有無 轉輸難易 分揀完體造作 從之³²⁾

이와 같이 各道兵船을 總計 185隻을 增加시켜 總數 613隻으로 強化하였고 당시의 水軍兵數는 五萬五千名에 達하였다고 推定하고 있다.³³⁾ 이 밖에 新兵器로서 火藥使用, 烽火設備, 沿岸築城, 兵器改良 등이 文獻上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② 歸化倭人에 대한 規制

歸化倭人이 記錄上 最初로 나타난 것은 高麗 恭愍王頃³⁴⁾부터라 하겠지만 高麗朝의 政治的 混亂

29) 太宗實錄, 卷 6, 太宗 3年 9月 甲辰條.

30) 太宗實錄, 卷 6, 太宗 3年 12月 戊子條.

31) 太宗實錄, 卷14, 太宗 7年 7月 戊寅條.

32) 太宗實錄, 卷15, 太宗 8年 3月 庚午條.

33) 太祖實錄, 卷15, 太祖 8年 3月 庚午條, 濟野馬態, 倭寇と朝鮮の水軍, (史學雜誌 26の1)(濟野馬態遺稿).

34) 高麗史 卷41, 恭愍王 18年 7月 辛丑條.

과는 달리 李朝에 들어오면서 「近年倭寇稍息」³⁵⁾이란 海防政策이 성공한 후부터라 하겠다.

歸化人이 발생하는 데는 具體的인 경우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一般的으로 武力에 의한 他律의 경우와 諸般與件에 感化되어 보다 向上된 生活을 영위하려는 自律의 경우로 二大別 할 수 있다. 즉

趙英茂分置倭於豐海道諸州 英茂至海州 使人傳令于倭曰 汝若欲戰速戰 不然 宜速降
以兵脅之 倭人氣沮 告降³⁶⁾

이라고 하여 싸움을 할려면 빨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복하라는 것은 武力의 他律에 依해 他律의 으로 하게된 것이다,

倭船六十 到寧海邊山島 其萬戶林溫等 奉書於觀察使韓尚質曰 吾等欲降 若許貴國邊
之一處 又給食糧 則我等無敢有二心 且禁他盜 尚質以聞 上論之³⁷⁾

와같이倭船六十隻의投降은 生活維持目的으로 自律의 으로 归化하게된 것이다. 이 밖에 太祖 6年 3月에는 對馬島倭船 10隻이投降 또 同年 4月에는 兵船 24隻의投降 등³⁸⁾은 종전에는倭寇였다가 李朝의 對倭人 懷柔策과 水軍整備強化로 侵奪이 不如意함에 归化하는 경우도 있다. 또 강압적인 위협으로 間接의 으로 归化를 도모한 것도 있다. 즉

佐郎答 對馬島萬戶左衛門太郎書曰 承書備認旨意雖然 待人之道 誠則與之 詐則絕之
我朝厚息 君宜終始 勿背母或不誠以致後悔³⁹⁾

라 하여 誠意를 보이면 후대하고 詐害하면 絶交하니 미리 다스리지 않으면 후회한다고 하였다.
또 그 數는 적으나 平和의이고 自意의 뜻에서 归化한 경우도 있다. 즉

日本僧原海 率妻子來 稍精醫術 命長髮援典醫博士 姓平⁴⁰⁾

이와같이 归化人은 勢不得하여投降하여 永住하든가 生活不安定 때문에 生活安定處를 찾는
目的으로 归化하였다. 이것은 李太祖의

(前畧) 上引見與之語 賦疚六衣一襲 高頂笠一曰 汝來何意 六對曰 聞殿下撫降者不念
舊惡 願諸土而爲氓 上曰 降者非獨汝也 受降者 非獨我也 天下皆是 汝去則不必追來則
不必拒 汝之去就汝惟耳 汝可還去與爾背 今知此意 汝輩之中 豈無有福智者乎 其思長
久之計 更來告之 六泣涕而退 命三司左僕射禹仁烈 藝文春秋館學工河倫 賦宴于所館⁴¹⁾

라고 表現한 바와 같이 李太祖 및 여려 歷代王들의 归化政策의 一端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汝去則不必追來則不必拒」라 하여 너무나倭寇의掠奪防止를 위한 消極의 형태에서 대우하였고 나아가서는 朝鮮이倭寇의 궁극의 生活安定處인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35) 太祖實錄, 卷4, 太祖 2年 11月 己巳條.

36) 定宗實錄, 卷3, 定宗 2年 4月 蘭.

37) 太祖實錄, 卷10, 太祖 5年 12月 癸巳條.

38) 太祖實錄, 卷11, 太祖 6年 3月 戊寅條 및 癸未條.

39) 世宗實錄, 卷13, 世宗 3年 9月 辛酉條.

40) 太祖實錄, 卷12, 太祖 8年 8月 甲辰條.

41) 太祖實錄, 卷10, 太祖 5年 12月 乙巳條.

따라서笔者는 世宗朝 倭寇가 終息될 때까지의 歷代王들의 禁寇政策의 하나인 歸化 장려를 위하여 多角的인 政策을 模索하고 歸化後의 心的 態度를 分析하여 여기에 대한 對備策을 보기로 한다.

上命都堂曰 今慶尙乞降倭人 跛誠僞難知 固當受降 彼雖不誠 我母失言 但自強彼先發寇⁴²⁾

慶尙道의 降倭人은 그 誠意가 區別하기 곤란하나 비록 彼雖不誠하더라도 最大限으로 信賴토록 하고 不得已하면 發寇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世宗實錄에도

宜旨對馬島倭 名雖歸附 實非誠款 刷慶尙左右道 諸浦兵及水軍分泊巨濟島 以待賊變其諸浦水軍 以附近傳衛牌 代之⁴³⁾

라고 하여 그들이 歸化는 했다 할지라도 그 真意가 疑問視되므로 水軍으로 하여금 이에 防備케 하였다.

또 歸化倭人은 農業之民 漁業之民으로 移住케 하는 한편 그들의 力量에 따라 그에 맞는 官職도 주여하였다. 즉

降倭庶六 宜略將軍 龍驤巡衛司行司直兼 海道管軍民萬戶 非庶時知 敦龍校尉 龍驤巡衛司左領 行司正兼管軍百戶(太祖 5年, 丙午條)

이라고 하여 宜略將軍(從四品職)을 위시하여 平道全에 大護軍을 賦하여 官職에도 등용하였다.

이 以外에도 歸化人은 造船者나 倭寇侵略時에 從軍者 등으로 활약했다.⁴⁴⁾

다음에 歸化人에 대한 衣食住生活에 대한 國家政策을 보면 世宗實錄에

禮曹啓 前例投化人等 限三年 勿論有無識 紿春秋 禍衣一襲 褒節單衣一襲 今濟用監事煩製造爲難 請笠靴外衣服 每一名 紿春秋等 莖布二匹 綿麻布各一匹 秋冬等之紬四匹 莖布二匹 綿布一匹 綿子三屯七兩 以爲恒式 從之⁴⁵⁾

이라고 하여 종전에는 完製된 衣服을 주었다가 濟用監의 煩雜을 피하기 위하여 布로 代身하여 주는 것을 恒式화하고 있다.

다음에 歸化人的 居住地에 대한 國家政策을 보면 世宗實錄에

禮曹啓 向化待衛倭 野人 入接家舍 今後以屬公家舍 及空閑家舍給之 若無則大路左右旁空閑行廊 量其人口多少 或二間或一間 令繕工監 修粧給之 以爲恒式 從之⁴⁶⁾

이라고 하여 倭人이나 野人은 다 같이 入接家舍가 公家에 속하는 것을 주되 만약 公家舍가 없을 때는 大路의 左右房이나 空閑行廊을 주며 그 人口의多少에 따라 繕工監에서 修粧하여 주도록 恒式화하고 있다.

42) 太祖實錄 卷11, 太祖 6年 3月 戊辰條.

43) 世宗實錄 卷13, 世宗 3年 10月 癸巳條.

44) 世宗實錄 卷12, 世宗 3年 7月 戊辰條.

賜倭人藤次郎 三末三甫羅等 家舍口糧 及奴婢二口 次郎善造舟損者.

45) 世宗實錄 卷20, 世宗 5年 5月 壬辰條.

46) 世宗實錄 卷64, 世宗 16年 4月 戊午條.

다음에 田土 田租徭役에 대한 歸化人의 國家政策을 보면 世宗實錄에

今後 向化新來人 田租限三年 僉役限十年 免除⁴⁷⁾

이라고 하여 田租는 三年 僉役은 10년동안 免除하여 줌과 동시에 특히 受官職者에 대하여는 特別한 대우를 하고 있다. 世宗實錄에

吏曹判書許稠啓 向化人 受本朝官職者 欲受科田 若考族派 則未知其限 不弁族類 則有違於法 行以處之 上曰 向化之人 受本朝之職 則自此而爲類土矣 虽未知宗派 紿田可也⁴⁸⁾

이라고 하여 本朝의 受官職者에 대하여 田土를 賜給함에는 그 宗派에 까지 미치게 하고 만약 宗派가 애매하다 할지라도 田土賜給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規制는 歸化人에 대한 정확한 分析을 하지 않고 無差別의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은 歸化人的 過大한 우대정책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李朝의 歸化人에 대한 優待政策으로 倭寇防止에 큰 成果를 거두었다. 太祖實錄에
島倭草面來朝 復商商賣 南道之民 安心僉居 戶口益增 鶴鳴狗吠相聞 濱海之地斗絕之
島 墾田無遺 不知兵革 日用飲食而已⁴⁹⁾

이라고 하여 南道之民은 安心하고 살 수 있어 날로 戶口가 증가하고 太平盛大한 번영을 하고 있음을 表現하고 있다.

그러나 麗末의 極端的 無去來로 我國之民에 대한 掠奪, 放火, 殺人, 強賣 등으로 오는百姓들의 苦心을 終息시키고 倭國과의 正常의 通交去來關係의 수립에는 政治의 으로 큰意義가 있겠으나 歸化人에 대한 衣食住의 生活에까지 全般的으로, 國家負擔으로 因하여 그 經濟의 지출이 至大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에 대한 과잉적인 優待政策은 오히려倭人們의 오만성이 크게 나타나게 되어 여러가지 規制策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李朝歷代王들의 權力體制와 상관성을 가지면서 잡다한 副作用이 발생하였으니 이것이 곧 三浦倭亂이요 壬辰倭亂이었다. 즉 兩倭亂의 極端的 無去來는倭人们的 底邊에 있는 掠奪根性에根本의 이겠지만 國內의으로도 分黨派爭과 記綱의 紛亂, 社會制度의 弊端과 道義意識의 墮落, 朝臣의 無能과 實踐力의 微弱, 輕武思想, 事大思想과 他力依存性 등이 間接의 原因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人相食之亂”이라고도 하는 壬辰倭亂 때倭人们은 朝鮮人으로 하여금 日本에 歸化케 하여 諸般文化의 傳播者의 役割을 하였던 것과는 달리 歸化人的 規制에 다만 「禁寇」라는 것에 限定하였음이 아쉽게 생각된다.

III. 李朝 初期의 去來規制

李朝時代의 모든 去來는 그 창구로서倭館의 役割을 無視할 수 없겠고倭館을 設置하였다는

47) 世宗實錄 卷25, 世宗 6年 7月 壬寅條.

48) 世宗實錄 卷58, 世宗 14年 11月 己未條.

49) 太祖實錄 卷8, 太祖 4年 12月 癸卯條.

것은 곧倭寇와 같은 極端的 無去來狀況을 正常的 대지 統制의인 去來規制를 定立하기 위한 產物인 것이다. 따라서倭館의 變遷이 去來規制 定立過程을 如實히 나타내는 것으로서 처음倭寇를 多方面으로 禁壓하기 위해倭館의 併設(三浦, 豆毛浦, 絶影島 등)을 취한 것도 그 두드러진理由라 하겠고 또 正常的 去來를 하기 위해倭寇의 소굴인 對馬島를 征伐한 것, 또倭寇去來自體의 파탄(三浦倭亂)일 경우에는倭館 그 自體의 閉鎖등으로 正常去來를 위한 我國側이 그 主導權을 가지고 새로운 統制를 加減하면서 去來規制를 定立하여 왔던 것이다.

처음倭館去來는 多元的 去來規制에서 釜山倭館으로 一元의 去來規制가 定立되었지만 併立複數의倭館中에서도 釜山倭館의 去來가主流로 되었음을 無視할 수 없겠다. 따라서李朝初期의去來定立過程은 바로倭館去來인 바 이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①倭館設置를 통한去來規制定立過程 ②倭館去來에 관한 約條 및 例規를 중심으로 하여 分析코자 한다.

(1)倭館과 去來定立過程

既述한 바와 같이倭館設置以前의朝日關係는 그外交交涉이 一進一退를 거듭하다가 麗元聯合軍에 의한日本征伐以後倭寇의 창궐이 잡작이 급증하자 이를 終媳코져 李太祖以後交隣政策을 수립하여 渡來倭人을 寛大히 한結果 그들의 興利, 受職, 受圖, 歸化등으로 그 數가增加함에 따라 焚蕩作弊가 심하여 비로서 그것을 경제하기 위해倭館(浦所接待處)를 設置한 것이다.

倭館設立에 대해서는 太宗 7年說¹⁾과 太宗 18年說²⁾이 있으나筆者는 前說을 支持한다. 이때釜山浦乃而浦를 限定하고 太宗 18年에 다시 塩浦加背梁(齋浦)이 첨가되어 四浦倭館이 되었다. 그후 世宗 5年에 富山浦乃而浦 世宗8年에 富山浦, 乃而浦, 塩浦 말하자면 이것이 歷史上 三浦倭館으로 불리워져 中宗 5年 三浦倭亂 때까지 계속되었다.

당시의 各倭館의 사정을 출잡아 보건대 그중 富山浦倭館의 事情이 가장 代表的인 것으로

命分置慶尚道興利倭人 兵曹據慶尚道水軍都節制使牒呈啓曰 富山浦來居倭人 或稱遊女 或稱商賣 日本客人及興利倭船到泊 則相繫支待 男女交權 他浦到泊客人 亦未沽酒託以待風 累日淹留 窺貼虛實 亂言作弊 乞於左道鹽浦 右道加背梁 各置倭館 刷出恒居倭人 分置居生何如 命曰 今本道分置之際 母致人心浮動³⁾

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來居倭人的 數는 점차로增加 그중倭遊女까지 들어 오게 되어倭使船貿易船이 오게 되면 서로 대접한다고男女交權 심지어他浦에 정박하고 있는倭人까지 모이게 되어 累日滯留하면서 亂言作弊하였으므로 여기에 비로소去來規制定立의必要性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倭館의單一體制는 世宗때 對馬島征伐과 三浦倭館의併立이후 가장重要的規制定立의契機로 볼 수 있다. 単一化倭館을 設立할 만큼 李朝政府는去來規制에 있어 強

1) 小田省吾, 李氏朝鮮における倭館の變遷(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 朝鮮支那文化の研究, 94面).

2) 李欽濟, 朝鮮初期倭人接待考(上) 38面~44面(史學雜誌 3號).

3) 太宗實錄, 太宗 18年 三月 壬子條.

力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三浦倭亂 直前에 가장 渡來倭人의 數가 많았으니 그 중에는 歸化倭人 恒居倭人 興利釣魚互市 등에 관여한倭人은 물론 三浦의 우리 土地를 侵占耕作하는倭人們까지 생겼는데 그 중 航路碇泊地關係로 가장 심한 것이 肇浦였고 이로 인한倭人的 作弊가 드디어 三浦倭亂으로 發展하였다. 이에 대한 對應策으로서 三浦倭館을 閉鎖하였으나 그후倭國則의 積極的인 外交交涉으로 「壬申約條의 體制」가 確立되었다. 이렇게 무질서한 去來秩序를 回復하기 위해 約條는 ① 肇浦의 開港을 통한倭館單一化를 기하고 ②倭船數의 規制등 歷史的으로 重要한 意義가 있는 것만을 論하고자 한다.

① 肇浦倭館⁴⁾

富山浦 塩浦 肇浦등의 三浦가 併立後 中宗 5年 三浦倭亂이 일어나倭館을 폐쇄한 후 中宗 7년에 壬申約條의 規制가 定立되어(後述) 肇浦倭館만이 開設되어 中宗 39年경까지 존속하였다. 이것은 종전의倭館併設體制에서 單一體制의 기초가 確立되었다. 이를 違反할 경우에는 海賊으로 看做하는 嚴한 規制를 하게된 것이다(後述).

② 富山浦 倭館⁵⁾

三浦倭亂후 肇浦만을 開放해 오던 중 다시 中宗 39년에 肇浦倭인이 우리나라의 軍官 30餘名을 殺害하는 事件이 생겼는데(後述) 그러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비로서 單一倭館을 富山浦에 옮겼다. 왜냐하면 肇浦의 位置는 多島海에 면하고 있기 때문에 作弊한倭人們이 도피하기도 좋고 隱身하기도 좋아 規制하기 어렵기 때문에 富山浦로 옮긴 것이다. 이에 대한 資料는 그 후의 記錄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다. 즉

祖宗朝接待此輩于本浦(肇浦)海中島嶼甚多 此輩憑藉朝貢 隱泊諸島 出入剽擗 一年殺害之數 無慮百餘 而庚午之變此輩亦有隱泊作賊之迹 後弊甚大 故朝廷反覆熟議 移待此輩于釜山 釜山爲浦一望無碍 此輩往來無隱泊潛形之也 有風波往來之艱 故此輩抵死要請 然待敵國之道 不可順便其路 關防之設不可輕易撤毀 故皆以爲不可⁶⁾

로 되어 釜山移設의 理由가 明白하다.

이때를 즈음하여 李朝政府는 行政規制를 強化하였던 바 곧 釜山의 東平縣을 撤止하고 이에 東萊縣을 併合하여 東萊都護府로 升格 東萊府使가 여기를 관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水軍 兵營 關防軍 燩燧軍 城軍등을 포함한 一大 特殊行政機關으로서倭館去來體制를 定立하였던 것이다. 이 富山浦倭館은 壬辰倭亂으로 8年間의 閉鎖期가 있었지만 계속하여 李朝末期까지 單一體制로

4) 肇浦는 世宗 때 熊川縣내에 있었고 水軍基地로 重要할 뿐만 아니라 三浦倭館이 慶鎖后 單一倭館의 通交에 重要的 意義가 있다. 現在 昌原郡熊川面 肇德里에 城社를 발견할 수 있다.

5) 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釜山在東萊縣 山如釜形 故名即釜山浦也 有恒居倭戶北距縣二十一里라고 하여 豆毛浦로 移轉 때까지 있었다.

6) 明宗實錄, 明宗 22年 丁卯 5月 乙卯條.

지속한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倭館去來를 통한 約條 및 規制定立過程

李朝는 太祖7年 二浦(富山浦 乃而浦) 太宗18年에 四浦(富山浦 乃而浦 塩浦 加背梁浦) 世宗 8年경에는 三浦(富山浦 塩浦 薺浦) 등 여러 차례 변천하였으나 倭館設置의 限定政策에는 변함이 없었다. 즉 倭館設置規制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渡來倭人에 대한 規制인 바 여기 곁들여 恒居倭, 魚魚倭 및 侵田倭인의 規制가 문제되었다.

倭館規制 중 가장重要な 것은 世宗25年 癸亥約條이며 그후 中宗 때의 三浦倭亂으로 말미암아 그 收拾規制로서 中宗7년의 壬申約條가 맷어져 보다 強化된 規制가 마련되어 倭館體制는 壬辰倭亂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倭館을 中心으로 한 約條들을 보기로 하겠다.

① 倭館의 渡來規制

倭館設置를 계기로 渡來倭人(倭使·興利倭人)의 數, 物件, 船隻에 대한 規制가 각각 成立되었다. 그중 渡來倭인의 入國資格證 대지 旅券으로서 路引, 書契, 圖書, 行狀, 文引, 象牙符 등이 있어 각각 規制하고 있는데 그것이 있음으로써 正常的인 去來가 可能하게 되었는데 그 内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i) 書契 및 圖書

書契는 오늘날 外交關係에 있어서 國書나 外交文書로서 당시에 傳統性을 좋아하는 我國 爲政者가 禁寇交涉에 使用되었을 뿐만 아니라 渡來倭인이 寇盜行爲者가 아님을 証하는 文書다. 太祖 實錄에⁷⁾

遣前工曹典書崔龍蘇于日本都堂 致書九州節度使源了俊 其書曰
로서 書契使用의 實例를 알 수 있고 今後 島主 書契를 持參한 者만이 接待할 것을 規定하였다⁸⁾ 書契의 發行者는 原則적으로 使人 派遣權者라야 하겠으나 書契에 의한 亂雜性을 피하기 위하여 對馬島 宗氏만의 書契를 인정하였다. 또 書契의 圖書捺印方法이 세가지 종류가 있어서 緊急事에 따라 三著 二著 一著의 順으로 날인한다는 密約에 따라接待의 差別을 두었다.⁹⁾

圖書는 世宗 初期부터 비롯되었는데 당시 日本諸州의 侯國이 청하면 王이 禮曹에 命하여 賦給토록 되었고 그후에는 日本諸州에서 鑄給토록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圖書는 書契에다 우리 나라에서 發給한 造給圖書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후 造給圖書의 僞造가 繢出함에 따라 真偽를 確認하기 위하여 禮曹는 三浦에 分置하여 엄격히 대조하였다.¹⁰⁾ 뿐만 아니라 本人에 限하여 使用하여야 하며 父子間이라도 使用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圖書와 書契가 어느것이 먼저 使用하였는가에 대하여는 「書」가 使用될 때 圖書가 使用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書契가

7) 太祖實錄 卷 6, 太祖 3 年 10月 丁丑條.

8) 世宗實錄 世宗 2 年 潤正月 己卯條.

9) 世宗實錄 卷85, 世宗 21 年 9月 甲戌條.

10) " 卷85, " 10月 庚子條.

먼저 생긴 것으로 본다.¹¹⁾

(ii) 行 狀

行狀은 高麗中期부터 對女眞人 懷柔策으로 사용했으며 商賣들의 行商證明이었다. 뿐만 아니라 東北面과 西北面에 密貿易이 盛行했으므로 이를 規制하는 方法으로 使用된 特殊旅行免狀으로 多方面에 使用되고 있었다.¹²⁾

慶尚道兵馬節度使姜思德 以各浦事宜……興利船於各浦散泊 窺貼虛實 實爲未便 前番
都節制史 報于議政府 使於左右道都萬戶防禦之處到泊 令諸島倭船 不能通知其故 依
前於各浦散泊 乞通諭各道渠首 行狀成給 使於都萬戶在處到泊 以防詐僞 以一體統¹³⁾
로 되어 있어 前記한 圖書 書契보다 일찍 시행된 것으로 興利倭人에게 適用된 것이다.

(iii) 路 引

路引은 行狀과 같이 使用되었는데 經國大典 戶典 雜稅條를 보면 「行商給路引收稅」로 되어 元來 國內商人에게 通用된 것으로 商人중에 路引이 없는 者는 그 物貨를 몰수하고 無路引者를 告發하는 者는 賞을 주었다.¹⁴⁾ 또 太宗 12年에 西北路引法을 制定한 것을 보면 密貿易防止에 目的 을 두고 한 것이었다.¹⁵⁾ 이것이 그후 倭商人에게 발급되었다. 그리고 經國大典 禮典待使客條에는 倭人到浦 邊將考書契 圖書 路引 依歲數上送 書契違格者 還入送
으로 되어 있으니 당시 渡來倭人的 諸入國證明書에 違反이 있으면 召還되었다.

(iv) 文 引

文引은 對馬島主가倭館에 出入할 수 있도록 許可發行한 通行確認書인데 이것을 發行할 때마다 對馬島主는 收稅할 수 있었으나 그의 重要한 財政收入이 되었다. 이것을 所持하지 않고 倭館에 出入하면 李朝에서는 退去 押送하였다.

이 制度는 世宗 8年(1426年) 李藝가 對馬島에 있을때 宗貞盛이 「臣恐諸處雜人 汎濫橫行 各處使船及興利船 皆給路引 今後無路引者 不許接待」¹⁶⁾라고 要請한 것이 인연이 되어 實施한 것이다. 이것은 對馬島의 地理的 位置와 倭寇에 대한 宗氏의 영향 및 宗氏와 朝鮮과의 特殊관계를 利用하여 多元的인 對日關係를 一元化하려는 目的에 있었다. 여기에 결들여야 할 것은 釣魚文引인데 이것은 釣魚倭인이 우리 近海에 와서 釣魚할 수 있도록 發給한 文書이다.

對馬島人釣魚者 受島主三著圖書文引 到知世浦納文引 萬戶放給文引 孤草島定處外
不許橫行 釣魚畢 還到知世浦 還萬戶文引納稅魚 萬戶於島主文引 回批着印還付受驗

11) 經國大典, 禮典 待使客條.

12) 太祖實錄, 太祖 7年 10月 乙丑條
太祖 17年 7月 辛丑條

行狀이 없는 者는 도적으로 看做하였고 또 노비의 도끼방지를 위하여 계주도 여행에 필요하였다.

13) 太宗實錄, 太宗 7年 7月 戊寅條.

14) 太宗實錄, 卷21 太宗 11年 2月 壬辰條.

15) 太宗實錄, 卷13 太宗 12年 4月 丁丑條.

16) 世宗實錄, 卷32 世宗 8年 5月 甲寅條.

若無文引者 稱不勝風浪 潛持兵器 橫行邊島者 以賊論¹⁷⁾

로 되어 釣魚文引을 가진 자 만이 釣魚할 수 있었고 그 文引이 없이 兵器를 감추고 近海의 島嶼를 배회하면 海賊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V) 象牙符

象牙符는 成宗때 부터 미리倭國王使,倭大臣을 위해 象牙符의 中間을 二分하여 그들의 渡來時에 그것을 證明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倭國의 要請에 의하여 國王使나 巨僕使의 訐稱을 防止하고 자기들의 有利就接待를 받기 위한 것인데 그 모양을 보면

符驗制 周圍四寸五分 圓經一寸五分 一面書「朝鮮通信」四字篆 一面書「城化十年甲午」六字
又每部一面左右 各事第一至第十¹⁸⁾

② 恒居倭의 諸禁規制

倭寇가 없어지자 渡來倭인의 增加로 三浦恒居倭까지 생겼는데 이에 대한 記錄으로 太宗 19年 3月 壬子條(記述)나 傭齊叢話에

世宗三年 征對馬島 雖不得大捷 而倭亦晨 戒不敢律 有倭戶數戶 欲居三浦¹⁹⁾

로 되어 있어 對馬島征伐以後 恒居倭가 잇따라 三浦에 來到하여 居住하면서 累日淹留, 窺貼虛實, 男女交權, 亂言作弊, 등을 일삼아 심지어는 三浦의 田地耕作 뿐만 아니라 釣魚를 하면서 恒居코져 하였으니 여기에 당연히 恒居倭인의 追放,耕作 釣魚를 禁止하여 正常의 去來를 위한 規制가 要請되었는데 그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i) 恒居倭의 追放

恒居倭는 亂言作弊·累日淹留·密貿易 등의 防止를 위하여 강력한 規制를 행하였다. 海東諸國記에 “答宗貞書”에 의하면²⁰⁾

i) 先王以對馬島人 寄居三浦者 日增 在彼則逃賊 在此則隱迹 投間邇詐 爲蠹於邊 乃命

禮曹移書島主 令遵舊約 占刷以聞 先島主即遣人 來刑罪人 方欲占刷 而邇疾未果

(中略)

ii) 本曹竊考厥初 貴島之人來市我邊 因而寄居三浦 其數甚少 久而漸多 歲甲寅 我莊憲大王視微慮遠 命悉刷還 當時島主悉刷還之 而姑留六十名 契後因仍 以至于今客姦積多 勢必生釁 如是而猶爲 姑息之計實非永好之道……(下畧)

로 海東諸國記의 〈答宗貞書〉項에 기록되어 있는 바 (i)은 世宗 18년의 追放과 世祖 成宗 때의 追放문제를 (ii)는 成宗時の 記錄이다.

17) 海東諸國紀, 朝聘應接記 釣魚禁約條.

18) 成宗實錄, 成宗 5年 12年 丙申條

李鉉宗, 朝鮮倭人接待考 44面~53面(史學雜誌 3號).

19) 傭齊叢話 卷 8, (大東野乘 260面).

20) 海東諸國紀, 答宗貞書項.

당시에 三浦에 渡來倭人은 互市釣魚의 場所가 정해져 있었고 또 그 용무가 끝나면 退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차로 留久者가 늘어나서 심지어는 盜賊·詐欺·刑罪人까지 留浦하게 되었으니 世宗 18年에 強制追放된倭人的數는 乃而浦 293名 塩浦 96名 富山浦 29名이나 되었다고 하니²¹⁾ 그 만큼倭館에서의 正常的去來를 회피하고 非正常的去來인 潛商의 素地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ii) 恒居倭의 土地密賣 및 不法耕田

위에서 본 바와 같이倭人은 機會가 있으면 不法으로 留居하기를 일삼았기 때문에 追放문제가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留浦를 許可함에 따라倭館內나 各浦의 禁標地域內外에서 우리나라의 國民과 密賣買를 하고 나아가서는 不法耕田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 또한 土地의 不法去來로 말미야마 우리 國民의 强制移住가 발생되었고 또 그러한倭人的侵田行爲에 대한 行政官의 懲罰措置 등을 하였으나 그效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 한편 徵稅形式을 取하여 그러한 不法行爲를 補完도 하였다. 이와같이倭人的耕田行爲은 끈덕진 것이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또 이러한 不法耕田의 문제로 李朝當局과의 對立이 結果적으로 생긴事件이 바로 三浦倭亂이었고 그러한 惡事態가 發生하였다는 것은 곧倭人的不法耕田이 얼마나 過度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제 위의 過程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i. 成宗5年에倭人的侵田行爲가 비로소 문제되었던바 즉

(前畧)……又審倭人侵占公私田之形以啓²²⁾

ii. 또 成宗 9년에는 侵田倭人과 不法去來한 國民과 그 監督을 소홀히 한 行政官에 대한 措置를 하였는데 즉

戶曹據慶尙道觀察使啓本啓 三浦倭人田地 非自己所起 本是我民之田 然今追奪 實難如法收稅 亦難請 自今隨其年分 隨稅納州倉 且其田地 賣與倭人者及 以己之田暗錄倭人名籍者 並決一百 全家徒兩界其田沒官 守令之不能糾察者 罷黜 從之²³⁾

라고 하여 恒居倭가 我國人の耕田을 侵占 또는 賣買하고 나아가서倭人名義로 田籍을 登錄한者が 생기게 되어 收稅조차 못하여 不正去來한 我國人을杖一百과兩界地方에 强制追放하고 그田을 没收함과 同時に 이에 대한 行政責任者를 罷免케 하였다.

iii. 侵占이 度가 넘쳐 成宗25年에는 侵田行爲가 극에 달하였다. 즉

禮曹判書成倪 參判鄭敬祖來啓曰 前者三浦倭人 殺害人物 奪耕公田 劫奪萬戶²⁴⁾

iv. 위의 過程에서倭人的 분탕이 甚하자 그들의 規制方式을不得已 그事實을 認定하고 收稅方式으로 轉換하였으니

戶曹啓 乃而浦恒居倭人 新墾陳地勿令禁止 依他例收稅²⁵⁾

21) 世宗實錄, 世宗 18年 乙未條.

22) 世宗實錄, 卷38, 成宗 5年 1月 癸丑條.

23) 世宗實錄, 卷89, 成宗 9年 2月 辛酉條.

24) 世宗實錄, 卷281, 成宗 25年 1月 甲寅條.

25) 世宗實錄, 卷70, 世宗 17年 庚戌條.

로 되어 있어 이미 世宗 때부터 문제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世宗 때에는 그目的이 交隣에 두었다.

V. 나아가서 恒居倭人이 境界를 벗어나서 造家居住하여 우리 國民과 混居할 지경이었다. 즉 諭慶尙道觀察使金永瑞 左道兵馬節道使金舜臣…曰. 今聞三浦倭人 造家不拘限界 亦無定數 任其所爲侵占益多 將有滋蔓之弊 舊例倭戶與吾民 不得混處 萬戶守令 慢不奉法 以至於此 鄉等 其任所在守令萬戶 禁彼人限外造家 我民亦不得居相近 使之載然 以杜後患²⁶⁾

로 되어 있어 行政的으로 그들의 不法行爲를 없애는 方途가 심히 곤란하게 되었으니 그 事態를 是認하²⁷⁾ 않음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徵稅措置를 마련하게 되었다.²⁷⁾ 즉 徵稅를 함께 있어 그 骨字를 보면 ① 恒居倭人에 대한 徵稅를 하지 않으면 교활한 一部百姓이 自己 田土를倭人 所有로 曙錄²⁸⁾ 脱稅할 우려가 있다는 點 ② 有田則有租의 原則에 立脚하여 비록 恒居倭人일지라도 이 原則에例外가 될 수 없다는 黓 ③ 一定한 禁標를 정하여 그 禁標內의倭人耕作地에만 부담케 하고 禁標外는 이를 禁止 没收하는 黓.

이상 여려 面에 대한 慎重한 論議끝에 結局 成宗 25年에 이르러 徵稅가 正式으로 決定되었던 것이다.

(iii) 恒居倭의 釣魚規制

우리 나라와倭國과의 漁業 및 釣魚問題는 오늘날과 같이 李朝에서도 存在하였다. 즉 禮曹據慶尙道監司聞啓 對馬島時羅三浦羅沙伊文仇老等 男婦十四名 到乃而浦自稱本土 無族親 可依過活爲難 願居貴國海邊 釣魚賣酒以資生業 清從願俾居乃而浦 從之²⁹⁾로 되어 있어倭人은 侵田耕作뿐만 아니라 살기 어렵다고 釣魚 또는 賣酒하기를申請한 일이世宗 8年에 생겼고

禮曹啓 對馬島捕魚興利船 曾於往泊於乃而浦 富山浦 塩浦等三處 今欲往來商販於加背梁 仇羅梁等處 且欲留同類一人換船軍 幷騎釣船 勿論他境隨意釣魚 然加背梁等處往來興販 固不可聽 只許船軍 換騎開雲浦等處 往來捕魚 從之²⁹⁾로 되어 있어 점차로 그 規模가 擴大되어 그야말로 捕魚하며 賣買去來를 함으로써 利得을 얻을 수 있는 漁船까지 動員할 만큼 되어 여기에 그들의 違法한 去來行爲를 統制할 수 있도록 措置를 강구하였던 바 곧 世宗 20年에

議政府據兵曹呈啓 慶尙道乃而浦到泊 捕魚探囊倭船於玉浦以北海中浦串 限日給文引玉浦萬戶 考其日限 隨即還送 梁山以南 禁其捕採之事 令監司都節制使 同議便否啓聞

26) 成宗實錄 卷45, 成宗 5年 7月 庚寅條.

27) 成宗實錄 卷87, 成宗 8年 12月 己亥條

李鉉涼, 朝鮮初期 倭人收稅考 22面 以下(史學雜誌 9號).

28) 世宗實錄 卷31, 世宗 8年 1月 戊戌條.

29) 世宗實錄 卷70, 世宗 17年 10月 乙卯條.

從之³⁰⁾

로 되어 있어 이제부터 不法釣魚를 統制하기 위해 1日間에 限해 漁撈할 수 있도록 하고 所定期日이 경과하면 즉시로 還鄉토록 하였고 또 梁山以南에서의 捕魚與否에 대하여는 監司와 都節制使로 하여금 그 可否를 啓聞토록 하였다. 아울러 그에 관한 節次(漁業)는

對馬島人釣魚者 受島主三著圖書文引 到知世浦納文引 萬戶改給文引 孤草島定處外 勿許橫行 釣魚畢 還到知世浦 還萬戶文引納稅 萬戶於島主文引 回批着印 還付受驗 勿若 無文引者 稱不勝風浪 潛持兵器 橫行邊島者 以賊論(前述)³¹⁾

로 되었으니 文引을 對馬島主로 부터 받아 當該 萬戶로부터 文引를 改給받고 定處外의 地域에서 釣魚를 禁止하였다. 이리하여 釣魚가 끝나면 稅魚를 納付하여 島主文引을 還給받는다.

따라서 점점 釣魚倭人の 活動規模가 擴大되었는 바 여기에 따라 收稅制度가 確立되어 갔다.

즉 世宗 23年에

禮曹啓 宗貞盛 請蠲孤草島釣魚之稅 然地稅不宜全除 請於大船一艘 稅魚五百尾 減三百 中船四百尾 減二百五十 小船一艘三百尾 減二百尾 以示厚待之意 從之³²⁾

로 되어 稅金조로 고기를 徵收하였던바 1隻마다 大船은 500尾 中船은 400尾가 小船은 300尾 었는데 宗貞盛의 請에 의하여 大船은 200尾 中船 150尾 小船 100尾로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稅魚는 三浦에 오는倭人接待費用으로 使用하였던바 즉

議政府據戶曹呈申 孤草島釣魚 倭船稅魚 從監司區處 以支使客之費 其餘市米布 以備國用 從之³³⁾

한편 三浦에 오는 恒居倭魚倭侵田倭에 대해서는倭館에 駐在하는 對馬島主 派遣의 使臣들은 그 生活이 호화로운 뿐만 아니라 그들은 倭人으로 부터 徵稅하였던 바 그 領數는 李朝政府에서 徵稅하는 領數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은 극히 注目되는 事實이다. 즉

① 四道巡察使洪應來復命…壽浦倭人戶數 繁盛富貴 其衣服亦美 塩浦 釜山浦之倭 貪寢莫甚 對馬島主於三浦居倭 遂人口數 徵貢太重³⁴⁾

② 日本國五島主源繁…問潛巖曰 三浦居倭 每歲以綿布 納貢于島主 大戶二匹 小戶一匹 三浦代官國長掌之³⁵⁾

③ 故差官揚熙止啓云 推問賊倭 奪劫漕運料事 塩浦倭酋奴耳沙也之文等 答曰…臣到釜山浦 招倭酋而羅多羅等開諭…又到壽浦 招倭酋沙豆等開諭曰³⁶⁾

로 되어 우리나라가 恒居倭人에 대한 徵稅를 始作한 成宗 25년에 比하여 10년 앞서 收稅하여 徵貢이 莫重하였음을 알수 있고 또 三浦倭人이 島主에게 納貢하였던 바 大戶 二匹 小戶一匹의 棉

30) 世宗實錄 卷80, 世宗 20年 1月 戊戌條.

31) 海東諸國紀, 朝聘應接記 釣魚禁約條

32) 世宗實錄 卷96, 世宗 24年 6月 丙午條.

33) 世宗實錄 卷119, 世宗 30年 2月 辛未條.

34) 成宗實錄 卷176, 成宗 16年 6月 戊戌條.

35) 成宗實錄 卷196, 成宗 17年 10月 丁丑條.

36) 燕山君 卷5. 燕山君 3年 4月 丙申條.

布를 마쳤고 뿐만 아니라 三浦에는 浦所倭人을 統治하는 代表로서 倭酋가 있었음을 볼때 당시의 여기에서 일어나는 派生의 非正常去來의 方法을 짐작할 수 있다.

(3) 癸亥約條의 去來規制

世宗 25년에 對馬島와 締結한 것인데 李朝一對馬島主一日本諸處의 三面의인 것으로서 비록 日本諸處의 侯主들도 事前에 對馬島主의 許可없이 李朝政府와 去來・外交를 할 수 없도록 견제한條約이라 할 수 있고 中宗初期의 壬申條約 및 明宗初의 丁未條約에 更訂繼承된 點이 큰 歷史의意義가 있는 것이다.

本條約의 草案者는 申叔舟였는데 그의 意見을 보면

鳥人敢爲海賊 侵掠我邊鄙 我先王遭兵問罪 數年之間 從來不通 宗貞盛乃與島之舊老
遣使來欲 待之如舊 自是 歲遣使船 或多 或少 我先王以諸州使船 皆有定額 獨對馬島
不曾定額 虧或生弊 癸亥之歲 始約以五十船 為歲額 凡島之有事任者亦 各有歲額 圖
書以受驗 其他 館待之節 道路之限 船之大小 人之多寡 皆有成規 各守信約 岡敢違越
自三浦上京 程有日限 而處文稽留 至有踰時徑歲 非徒島人 謀多受料 押行通事 亦有
謀私 以至於是…(下畧)³⁷⁾

로 되어 있는데 그 骨字를 보면 ① 李朝政府와 日本諸州간에는 歲遣船의 數가 정해져 있는데 반하여 對馬島主 사이에는 그 隻數가 정하여 지지 않았으니 여기에 統一해서 정할 必要가 있겠고 ② 그러므로 世宗 25년에 對馬島主가 三浦에 올 수 있는 隻數는 도합 50隻으로 定하게 되었고 ③ 한편으로는 倭使는 倭館에서 接待 그리고 上京하는 倭使의 使用道路 및 滯留 人員數까지 정해서 嚴守하도록 指置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内容으로 倭人們의 不法去來를 規制하였다는 것은 크게 歷史的으로 주목 되는 것이다.

① 歲遣船의 三浦分泊 對島主의 特送船 및 歲賜米豆에 관한 規制.

歲遣船을 年間 50隻으로 정하였으나 特別한 事由가 있을때는 李朝當局에 事前에 報告하여 별도로 使送船을 파견할 수 있고 歲賜米豆는 200石을 約定하고 있다.³⁸⁾ 그런데 米豆의 石數는 이미 世宗 10年(1428年)에 內規的으로 二百石을 定하였던 것을 때로는 三百石 二百石을 要請하므로 그 定數를 約條化한 것이다. 이것을 歲遣船의 定額내에 다시 制限策을 도모하였는데 ① 歲遣船 50隻 가운데 30隻은 上京하여 館待를 받고 나머지 20隻은 三浦에 남아 興販할 것. ② 一船의 乘員을 大船35 中船25 小船15로 限定할 것. ③ 留浦人の 紿料(滯在費) 支給에 대한 制限을設定하여 上京한 30隻의 看守人은 50日, 留浦 20隻은 30日로서 또 過海糧은 5日分을 支給한다는 등의 三個條의 세로운 制限이 規定되었다.³⁹⁾ 이러한 通交統制政策은 世宗代의 交易을 目的으로 한 交隣政策에 점차 經濟事情으로 인하여 歲遣船이 内容의 制限이 加重되었고 世祖, 成宗代의

37) 東文選收載 申叔舟의 「答宗貞盛」의 一節(釜山府史原稿 4卷 144面).

38) 通文館志, 卷5, 交隣 島主特送船條.

39) 世宗實錄 卷104, 世宗 26年 7月 己亥條.

接待體制의 整備와 交易에 대한 各種 制限策을 염중히 하였다.

且一浦에만 集中 碇泊하면 弊端이 있는 것으로 보고 미리 分泊시켰는 데

禮曹復書對馬州太守宗貞盛曰 貴島興諸處使送船 輿利船 若於一處積疊到泊 則一浦獨侵其弊 誠爲可慮 故輪次均分泊之意 累會通書違約…足下詳察前約 使送船隻一次乃而浦 二次富山浦 三次塩浦 輪次 均泊 分到浦泊爲幸⁴⁰⁾로 하였다.

② 歲遣船의 定數 및 渡來倭人數의 制限

歲遣船의 定數를 定하게 된 것은 倭船의 過多로 인한 倭寇로서의 變質을 막고, 各浦에 일어나는 亂言作弊를 없애고, 非正常的 去來(密貿易)로 因한 上國의 立場에선 物資가 不當히 流出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歲遣船의 定數에 관한 記錄을 보면

國王及諸巨酋使來則接待 對馬島主歲遣五十船 或因事別遣 則稱特送(無定數) 諸酋之諸州者 或歲遣一二船(時計四十〇名在諸州) 或歲遣一船(時計二十七·八在諸州) 皆有定約 其餘諸酋 或因事來朝 或遣事 皆時受教應待 受我國官職者 歲…來朝 不得遣人國王使 別有副船 或至三船 巨酋使 只有副船 其餘並一船 諸使皆受 對馬島主文引而後 乃來⁴¹⁾

로 되어 倭人 渡來時에는 반드시 對馬島主의 文引이 있어야 했고 島主의 歲遣船은 50隻 1,2船定約者가 40名 船數는 도합 40—80船, 一船 定約者 27名 船數는 27船임을 알 수 있겠다.⁴²⁾

다음 渡來倭人數의 制限을 한 것은 浦所 및 歲遣船의 定數를 定한것 以上으로 意義가 있다. 즉 渡來倭人數를 定함으로써 그들의 亂言作弊를 그만큼 實質的으로 規制할 뿐만 아니라 不法한去來를 또한 防止하는데 重要한 意議를 가진다.⁴³⁾ 또 上京倭使의 隨行定員數를 보면

國王使二十五人 諸巨酋使十五人 特送三人 別例則加一倍 九州節度使三人 載物5駁以上加一人 每五駁達加母過五人 諸酋使一人 每五駁加一人 母過三人 受職倭人(掌上官)三人 護軍以下二人 對馬島五十船 每船一人 每五駁加一人 母過二人⁴⁴⁾

로 되어 있어 不得已한 경우에 있어서 上京倭人을 增加시킬 때에는 物貨에 따라 增加시키는 데 物貨五駁까지 制限하였으니 아주 엄격한 規制를 하였다.

이와 아울러 그들의 上京路도 制限 하였던 바 世宗三年以前에는 倭人이 三浦 서울간에 來往 할때는 그 通路가 無制限이었다. 따라서 世宗 3年에 二道로 制限하였다가 癸亥條約으로 三道로 하여 非正常的 去來를 防止하려 하였다. 즉 陸路는

自乃而浦 由釜山 清州至京城 日行三息十三日程.

由大丘 尙州 槐山 廣州至十四日程.

自富山浦 由大丘 尚州 槐山 廣州至京城十四日程.

40) 世宗實錄 卷104, 世宗 20年 5月 庚申條.

41) 海東諸國紀, 朝聘應接記 使船定數條.

42) 李鉉宗; 前揭書, 53面~65面.

43) 世宗實錄 世宗 21年 4月 甲辰條.

44) 海東諸國紀, 日本書記 8道 66州 對馬島 一岐島條.

由永川 竹嶺 忠州 揚州至京城十五日程.

自塩浦 由永川 竹嶺 忠州 揚州至京城十五日程.

水路는 自乃而浦 由金海 昌寧 善山 忠州 廣州至京城十九日程.

自富山浦 由梁山 昌寧 善山 忠州 廣州至京城二十一日程.

自塩浦 由慶州 丹陽 忠州 廣州至京城十五日程.⁴⁵⁾

(4) 壬申條約의 去來規則

壬申條約을 壬申添定條約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三浦倭亂때문에 李朝政府는 三浦를 閉鎖하였기 때문에 對馬島主는 당황하여 交渉한結果 中宗7年(1512年) 壬申條約을 添定하였던 바 이는 癸亥條約에 統制的인 制限을 부쳤기 때문에 그려하다. 이것은 보다 강력하게 去來規制를 한點에 그 歷史的 意義가 있다. 따라서 그 重要內容을 살펴보면

1. 三浦勿許居
2. 島主歲遣船五十隻 今減其半
3. 歲遣米豆二百石 今減其半
4. 勿遣特送 如有所言事 因歲遣船未告
5. 島主子及代官 受取 受圖書人等 賦米豆歲遣船辨除
6. 深處倭或受圖書來通者 其歲及近功努緊歇 量減其通人內受圖書者 改給圖書
7. 凡出來倭人 自對馬島 至齊浦直路外 旁行他路者 以賊倭論
8. 上京倭人 國王使臣外 依中朝(中國)例 勿許持劔事⁴⁶⁾

라고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① 富山浦, 鹽浦, 齊浦 등지의倭館을 廢止하여 이에따라 恒居倭人 및 與利倭인의 居留를 禁止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規制目的은 互市 魚鷹地域을 設定하여 居留를 制限하였던 바 그 數가 加速度的으로 늘어나 潛商의 溫床이 되었으나 철저한 措置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② 從前의 島主歲遣船을 50隻을 制限하였던 것을 半減하여 25隻으로 하고
- ③ 癸亥條約以來 實施되어 온 米豆 200石을 半減하여 100石으로 하고
- ④ 特送船의 接持廢止規定을 두고 진급할 때에는 세견선 파견을 미리 고하도록 하였다.
- ⑤ 島主子及代官 受職 受圖書人등의 歲賜米와 歲遣船을 不許하고
- ⑥ 島主遣船以外 船舶의 加德島附近 來泊은 賊船으로 규정하였다.
- ⑦ 深處倭의 受職, 受圖書者로서 來通者中 歲月의 久近 공로를 참작하여 그 數를 量減하고 許通者는 圖書를 改給한다.
- ⑧ 對馬島에서 齊浦 直航路에 來通朝聘者는 賊倭로 規定한다.
- ⑨ 上京倭人은 國王使以外에 刀劍所持함을 禁한다는 등등의 9個條 등으로 確은 去來를 規制化

45) 成宗實錄, 成宗 2年 4月 辛亥條.

46) 中宗實錄, 卷16 中宗 7年 8月 辛酉條 및 壬戌條.

하였다.

그후 齊浦만을 開港하였으나 그들의 要求가 자자하였으나 그때마다 李朝政府는 拒絕하였는데 中宗 36年에 齊浦에서 我國人사이에 총돌사건(蛇梁鎮倭變)이 생겨 여기에 李朝政府는 더욱 강력한 태도로 임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條約이 締結되었는데 이때부터 富山浦만이 開港되었다. 이를 壬寅條約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 ① 齊浦의倭人居留禁斷
- ② 島主의歲遣米豆를 50石으로 減縮
- ③ 歲遣船으로 潛入居留하는 者는 賊으로 치단
- ④ 渡海上京費用을 감소.
- ⑤ 倭婦女의來居를 禁止
- ⑥ 受職人接待를 廢止하고 慶吊使의不派

위의 6개條 등으로 締結을 본 것이 中宗 때의壬寅年이었니 이를壬寅條約이라 하였고 또 中宗 39年에 齊浦를 폐쇄하고 富山浦만이 開設되어 1547年(明宗 2年) 丁未條約이 成立될 때 까지는 國王使만을 후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행위로 迎逢船의來航만이 인정되었다.

아울러 富山浦에서 上京하는 通路를 中路, 左路, 右路 등의 三路를 통하는 陸路와 水路를 限定하고 이에 따른 驛과 宴享所를 規制하였다.⁴⁷⁾

(5) 丁未條約의去來規制

丁未條約은 蛇梁倭變(1544年 4月)以後, 迎逢船以外에는 貿易을 許하지 않았다. 따라서 日本國王使 安必東堂一行에 의한 끈기있고 정중한 태도로, 通交要請을 함에 明宗元年(1549年)에 이루어진 約條이다. 이 條約은 中宗 7년의壬申條約과 비슷하나 보다 더去來規制를 많이 하였다 는 점에서倭人側에 不利하게 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즉

1. 歲遣船二十五隻內 大船九隻 中船八隻 小船八隻 各船人數 如過其數 留浦量 各減其半 受圖書受職來通船人數亦同.
2. 船上什物 一切勿給.
3. 稱風浪不順 加德島以西來泊者 論以倭賊
4. 五十年以前 受圖書受職者 依壬申年約條例勿許接持.
5. 乘夜踰牆或毀牆而出閭閻往來者 或乘三所船潛行諸島者 依憑探葛登山橫行者 永勿許接其船
6. 凡約束一從鎮將之令 連者重則三年 輕則限二年 許接持⁴⁸⁾

이라고 하여

① 蛇梁倭變에 대한懲罰條로 島主歲遣船을 절감하고 乘組員數를 嚴守케 하고 만약 위반할 때는 留浦量을 半減한다는 규정이다. 그 뿐 아니라 受圖人이나 受職人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47) 改事提要 下卷,倭人朝京道給條.

48) 明宗實錄 卷5, 明宗 2年 2月 乙未條.

- ② 船體修理등에 材料支給의 禁止.
- ③ 風浪不順을 가장하여 加德島以西에 來泊하면 倭賊으로 간주하고(釜山浦만 許容)
- ④ 壬申條約의 例規에 따라 50年前의 受圖書 受職人에 대하여는 接待를 不許할 것을 規定하였다.
- ⑤ 潛商禁止를 위하여 倭館滯在中の 行動制約에 관한 規定으로 指定範圍外에서 行動하는 者의 接待를 永久히 거절한다는 諒則強化까지 追加하였다.
- ⑥ 領將의 指令을 嚴守할 것을 約定한 것으로서 違反者에 대하여는 重刑에 三年 輕刑에는 2年동안 接待를 禁하였다. 그런데 丁未條約에서 對馬島의 特殊利益으로 취급하였던 賦賜米豆에 言及을 하지 않은 것은 壬申條約을 繼承하자는 데 있는 듯하다.
 이와같이 丁未條約이 成立한 以後로 倭商들의 來航이 急증하여 京商과 禁物賣買去來가 恣行되었고 동시에 倭寇와 併行하여 通交貿易이 행하여졌으므로 비록 條約內容은 엄격하다 할지라도 壬辰倭亂이 있기까지에 條文上의 내용이 絶對性을 가지지 못하고 다만 對倭關係의 命脈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6) 開市 및 潛商에 관한 規制

우리나라의 市場의 起源은 三國時代때부터⁴⁹⁾라 하겠으나 本論文에서는 倭館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釜山의 開市에 대한 것만 설명하겠다.

釜山地方의 市場日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倭館開市는 처음에는 月에 三日씩 행하여 졌던 것이나 光海君二年(西紀 1610年)부터 三·八의 날 즉 月에 六回의 開市로 되었고 때때로 臨時의 別市가 認定되었다. 開市는 주로 倭館內에서 행하여 졌는데 開市日에는 李朝의 武官이 倭館으로 와서 門을 警護하고 訓導別差는 小通事를 인출하여 館내에 들어와서 貿易을 임접하였다. 貿易의 場所는 開市大廳이었는데 여기에는 對馬島의 代官과 이를 관장하는 更屬이 座席에 앉고서 開市되었는데 朝鮮의 商人們은 倭館의 守門에서 官吏들의 取調를 받은 후에 大廳으로 가서 去來를 하였다. 그리고는 交易은 曝間에만 이루어 졌고 해가 지면 通行이 禁止되었다.⁵⁰⁾ 이와같이 倭館貿易은 원래는 엄격하였으나 후에 차차 紊亂하게 되었다. 즉 비록 李朝後半期의 開市事情이지만 八城志에 보면

漢陽譯人輩 多留重貨於此與倭通互市之利 密陽東南爲 東萊即東南海上 自倭登陸之初
境也⁵¹⁾

로 되어 단순한 國內市場이 아니라 國際性을 具有하는 去來임을 추측 할 수 있고 正成觀의 備齊叢話 중 釜山開市에 대하여 「班欄之衣 絡譯」로 되어 開市가 興盛되었음을 추측된다. 이러한 規模로서 釜山이 開市되었으니 여기에 菩提적으로 去來를 紊亂케 하는 潛商行為가 公貿易 以上으로

49) 新羅時代부터 開市가 된 것으로 보인다. 新唐書 新羅傳에 「新羅市皆婦女貿販」이라고 되어 있다.

50) 朴仁錫, 「釜山貿易考」, 釜山 第2號 95面.

51) 八城誌, 麥尚道條.

변창하였다을 것을 알 수 있고 앞에서 설명한 諸規制가, 非正常的 去來 및 密貿易을 規制한 것
이지만 여기서는(本項) 具體的 例規로서 潛商禁斷과 처벌문제를 알아 보기로 한다.

첫째, 三浦倭人 違法한 去來에 대한 治罪를 보면 즉.

戶曹啓 倭人到餘者 謂欲久留 所賚物倍增 其價不郎和賣 積日淹留 宜令官員通事督之
如有似前故留者 餘員通事 治覈不餘⁵²⁾

이라 하여 三浦에 倭인이 오래도록 머물기 위해 賄物을 우리의 官員에게 바치거나 오래 있기위
하여 故意로 物價를 倍增하여 물건을 팔지 않는 事例가 많았으니 이런일이 있으면 三浦通事와
官員을 염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또

三浦私貿易之禁 屢曾受教 嚴加禁防 而齊浦僉使 態川縣監等 縱容商賣任意貿易 請令
其道觀察使 摘發鞠問 以啓 且塙浦 富山浦 齊浦 皆倭船下陸之處 今後 前項官下去
商賣 勿給路引 從之⁵³⁾

로 되어 이미 三浦의 密賣買를 여러번 엄단하였고 또 이때 다시 三浦僉使들에게 엄격한 團東을
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觀察使가 治罪하고 나아가서 三浦의 密賣買倭人에게는 路引을 못주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潛商이 盛行한 것은 李朝貿易政策이 公貿易을 기본으로 하고 私貿易을 統制
한데 있다고 하겠으나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國家權力擔當者の 부배에 기인함이 많았다. 특히
李朝는 燕山君 以後부터 地方官의 統制가 해이하여 지고 驛路가 문란한데다 使者의接待도 不
充分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公貿易의 監督者인 邊將까지도 商賣와 결탁하여 私利를 도모하게
됨에 內外에 원성이 많았다.

둘째로, 上京倭人们이 驛路에서 密賣買行爲가甚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規制策을 강구하였다.
즉 日本의 船舶이 浦所에 도착하면 관할 觀察使가 사람을 보내어 物品을 조사하고 가지고 온
書契와 使用하고 있는 圖書 또는 路引을 검사한후 驛馬를 利用하여 上送하였는데 이러한 節次
가 점점 해이되어 菲商輩가倭人的通過를 기다려 驛路에서 密貿易을 하는 자가 증가하였다.

⁵⁴⁾ 따라서

參贊官 姜龜孫曰 倭人往來 久留諸邑 其弊不贊 此專是鄉通事 所嗾也 臣聞曩者 倭人
到尚州鄉通事 不遂所欲 激成倭人之怒 倭人出宿村家 細知民居貧錢 又竊其倉館所藏
之物殊失國體 請自今 治路守令 其通事領謀倭 到某邑 留幾日閱錄 交監司 轉啓 則似
此弊上可⁵⁵⁾

로 되어倭人은 上京途中 여러 邑에서 몇일동안 滯留하여 그弊가甚하였고 이것은 그들을 帶
同하였던 通事들이 또한 使嗾하였다. 심지어 뜻대로 안되면倭人們이 民家에 들어가 유숙하고
그 物件을 탐내고 훔쳐내어 나라의 體面을 손상케 하니 앞으로는 해당 道路의 守令이 團東하고

52) 53) 成宗實錄, 成宗 2年 1月條.

54) 朴仁錫, 前揭書, 88面~89面.

55) 成宗實錄, 成宗 24年 음 5月 丙辰條.

한 역에서 다음 역으로 수시 轉報케 하여 그러한 패단을 없애도록 하였다. 至 經國大典 禮典待使客條도

倭野人往來 勿令宿閭閣 如有侵擾諸邑諸驛 或出入放縱者 押領員人 杖八十⁵⁶⁾
로 되어 있어倭人의 民家出入을 금하고 出入放縱者에 대하여 엄격한 刑罰을 加하고 있다.
세째로, 서울에 到着한倭人들이 潛商行爲를 治罪 또는 禁斷한 경우가 있다.

원래 中央倭館의 貿易에는 物貨의 數量을 엄격히 調査하고 禁亂官과 倭館錄事의 監視下에倭人과 去來토록 하였는데 후에 商人이 通事나 使令과 共謀하여 禁製品을 買賣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刑曹啓 商賣之徒 出入倭館 汎濫貿易 故立防禦之法 收奪所持之物 依律治罪 然罪至笞五十 而又從願徵贖 山是重利慢法 以至通同外人 今後潛行貿易者 依大明律 細綱絲綿 私出外境 貨賣者杖一百 物貨船車並設官 其通同情亦著見者依盤 詰姦細條 痛懲從之⁵⁷⁾
로 되어 있어 刑曹判書는 京城 倭館의倭人 潛賣를 禁斷하고 犯法者は 貨物을 몰수 答刑의 罰을 加하였다.

맺는 말

李朝의 去來關係는 對內의이고 對外의인 諸與件과 相互聯關係를 가지면서 形成・發展되어 왔다.

高麗末期로 부터 李朝初期에 이르러倭寇의 極端의 無去來는 물론이고 非正常的 去來關係가 存在하였음이 歷史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倭寇의 야만적이고 포악한 소행이 李朝의 積極적인 對倭政策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감행되었고 이 소행이 變質, 發展된 것이 壬辰倭亂이요, 36年間의 韓日合併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事外交隣을前提로 하면서 그것이 지니고 있는 極端의 無去來의 경우와 그것을 除外한 非正常的 去來의 경우를 항상 念頭에 두고 그것을 그때마다 政策擔當者는 여기에 어떠한 對應策, 말하자면 法規制方式을 어떻게 취하였는가를 積極 消極兩方面에서, 또 그 對應態勢 즉 規制體制의 性格을 파악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規制를 함이 적절한가를 批判的인 立場에서 모색하려는 底意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法規制가 對內의인 것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對內의으로나 對外의으로 試鍊을 극복할 수 있는 主體의 規範으로 확립하고 多角的이고 全方位的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國防・政治・經濟・社會 등의相互力關係가 깨어져서는 안되겠다.

56) 經國大典, 禮典 待使客條.

57) 世宗實錄, 世宗 3年 6月 庚子條.

여기에 附言하여 둘 것은 앞으로 이 論題가 계속 研究될 것이므로 全般的인 結言을 맷기가
곤란하므로 간단하게 맷은 말로 대신하였다.

參考文献

- 1) 國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探究竟堂)
- 2) 東亞大學古典文化研究所, 高麗史(東亞大學出版部)
- 3) 申叔舟 海東諸國紀(譯註)(韓日文化研究所)
- 4) 古典刊行會, 東國輿地勝覽(東國文化史)
- 5) 法制處, 經國大典(韓日文化研究所)
- 6) 朝鮮野史全集, 儂齊叢話(乙酉出版社)
- 7) 朝鮮史料叢刊, 通文館志(朝鮮史編修會社)
- 8) 魚叔權等編 改事提要.
- 9) 釜山府, 釜山府史原稿.
- 10) 韓國學基本叢書, 東國通鑑(景仁文化社)
- 11) 世界歷史大事典(日本 平凡社 刊行)
- 12) 震檀學會編, 韓國史(乙酉文化社)
- 13) 韓國古典文學全集, 八域誌(大洋書籍)
- 14) 李相伯, 李朝建國의 研究(韓國研究院)
- 15) 金庠基, 高麗時代史(乙酉文化社)
- 16) 申基碩, 高麗末期의 對日關係(社會科學 第一號)
- 17) 朴壽伊, 李朝貿易政策論(民衆書館)
- 18) 韓國歷史學會, 史學雜誌.
- 19) 釜山市史編纂委員會, 港都釜山.
- 20) 田中健夫, 中世海外交涉史の 研究(東京大學出版會)
- 21) 石原道傳, 倭寇.
- 22) 濑野馬態, 倭寇と 朝鮮の 水軍(史學雜誌 26의1)
- 22) 小田省吾, 朝鮮支那文化の 研究(京城帝國大學法文學系)